

의안 번호	1914	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3. 8.(화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2. 3. 8.(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2. 3. 21.(월)

2. 제안이유

-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 수입 변화 및 당초 수립계획 대비 예금 이자 증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 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기금조성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	분	2022년도말 (기정)	2022년도말 (변경)	증 감
통합재정안정화기금		1,000,000	0	△1,000,000

나. 수입계획

-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: 1,000,000천원 → 0원
- 예치금 이자 : 1,170천원 → 1,314천원

다. 지출계획

- 예치금 : 1,000,000천원 → 0원
- 주차장특별회계예수금이자상환 : 1,170천원 → 1,314천원

4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

5. 검토의견

-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의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여유재원을 세입이 부족 하거나 긴급 수요가 발생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음

근거법규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 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